

노숙인복지시설 설치·운영 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10일		
신고인	성명(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)			법인명(법인인 경우에만 기재)		
	주소 (전화번호:)					
시설 개요	명칭		시설의 종류			
	소재지		(전화번호:)			
	시설의 장의 성명		생년월일			
	설치연월일		입소정원 명			
시설 설비	거실	m ²	사무실	m ²	상담실	m ²
	도서실	m ²	오락실	m ²	의무실	m ²
	목욕실	m ²	세탁실	m ²	조리실	m ²
	프로그램실	m ²	자활사업장	m ²	강의실	m ²
	자원봉사자실	m ²	운동장	m ²	창고	m ²
	대지	m ²	기타	m ²		
직원	총 인원	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	예산	수입 총액	지출 총액	
	명	명		원	원	

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숙인복지시설 설치·운영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법인의 정관(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2.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(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, 국유·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각 1부 3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. 시설의 평면도(시설의 총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)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5.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신고증 사본 1부(노숙인급식 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※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.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.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※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.	

